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검역대응 지침(제13-2판)**

2022. 7. 25.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본 대응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유입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3판)」을 근거로 국립검역소 검역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발생 상황에 따라 보완·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수정사항
공통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차 검사로 전환 - (기존) 해외입국자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 (변경) 해외입국자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실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입국자 유형(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확인 방법 추가 - 여권을 확인하여 내·외국인을 먼저 구분 - 입국심사 확인증(출입국 발급),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인지 여부 구분(본인 입증책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등록 추가 - 해외입국자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를 받고, PCR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에 등록 - (등록방법) 누리집 접속(https://cov19ent.kdca.go.kr) -> '입국 후 검사 등록' 클릭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모니터링 추가 - 보건소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입국 후 1일차 검사 결과 모니터링 및 검사 결과 미등록자 안내
공항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 제주 등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확대 반영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미이용자 입국절차 명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질문서 상 증상 해당자도 유증상자로 간주하는 부분 명시 - 건강상태질문서 상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유증상자에 해당 - 건강상태질문서 허위작성자 처벌근거 명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가능 부분 삭제
항만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자 양성인 경우 선박 내 격리 추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선 내국인 상륙 후 검사결과 대기장소 변경 - (기존) 재승선 내국인 하선전 검사 검역소에 실시 및 선박 내 대기 -> (변경) 재승선 내국인은 검역소에서 검체 채취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또는 숙소에서 대기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확인증 대신 검역조사증 발급으로 개정 - (기존) 항만 입국자, 재승선 내국인 검역소에서 하선전 검사까지 검역이 완료되어 검역확인증 발급 -> (변경) 항만 입국자, 재승선 내국인이 입국후 1일차 PCR 검사 후 그 결과를 자가 또는 숙소에서 대기가 가능한 바, 검역조사증으로 대체
부록/ 서식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검역신고서 개정 - 입국일자, 기 확진일자 부분 추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조사증 추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소용 기초역학조사서, 수동감시 안내문 개정

목 차

I. 대응원칙	1
II. 사례정의	2
III.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4
2. 검역대응 흐름도	4
3. 입국검역	5
4.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9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11
6. 입국 후 검사 관리	12
IV. 항만 검역대응 절차	13
1. 검역대응 흐름도	13
2. 검역조사	14
3.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18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20
5. 검역조사증 발급	21
6. 입국 후 검사 관리	22
V.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23
VI.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27
VII. 접촉자 관리	33
VIII. 기타 행정사항	35

서식 및 부록

<<서식>>

1. 건강상태질문서	34
2.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35
3. 특별검역신고서 및 앱 설치 안내	36
4. 검역확인증	38
4-1. 검역조사증	38
5. 기초역학조사서	39
6. 격리통지서	40
7. 입항선박 검역조사 방법 결정을 위한 점검사항	41
8. 검사의뢰 관리대장	42
9.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43
10. 격리대상자 관리대장	44
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확인서	45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자 조사 양식	46

<<부록>>

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수동감시 안내문	4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48
3.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52
4. 격리시설 내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61
5. 검역관리대상자 검역조치 절차 안내	64
6. 항만 입항 군용(軍用) 운송수단 검역절차	65

I. 대응원칙

- (법적근거) 코로나19는 '19년 12월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이후 방역 상황 변화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 으로 대응함(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제1호 가목, 질병청 고시, '22.4.25.)
 -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
- (대응방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효율적인 검역 절차 마련
 -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변경 예정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항만 검역의 경우, 본 지침을 기본으로 따르되, 검역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절차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코로나19와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 등은 ‘코로나19 검역대응 FAQ’ 참고

II. 사례정의 등

본 사례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변경에 따라 사례정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사례정의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 '22. 3. 14.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 3. 14. ~ 별도 안내시까지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

※ 검역단계 사례분류는 사례정의를 참고하여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과의 판단할 수 있음

◆ 해외입국자는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임. 입국 후 PCR검사를 받기 위해 관할 보건소 방문 시, 입국자 안내문, 항공권, **입국심사 확인증**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한 후 방문

2. 감염병의심자 정의(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2020.3.4. 시행)

○ 감염병의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

-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②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3. 장기체류외국인·단기체류외국인 분류 정의

○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 A-1~3, D-1~10, E-1~10, F-1~4, F-6, H-1~2, G-1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단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 B-1, B-2, C-1, C-3, C-4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은 입국불허 하되, 다음의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을 소지한 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및 송환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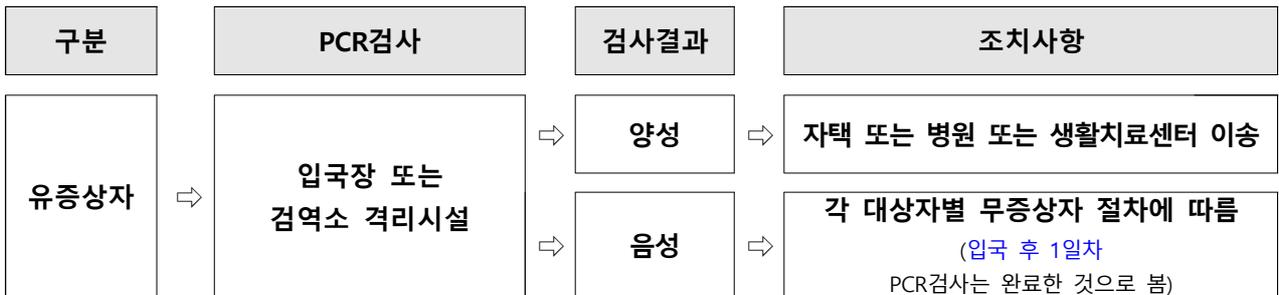
III.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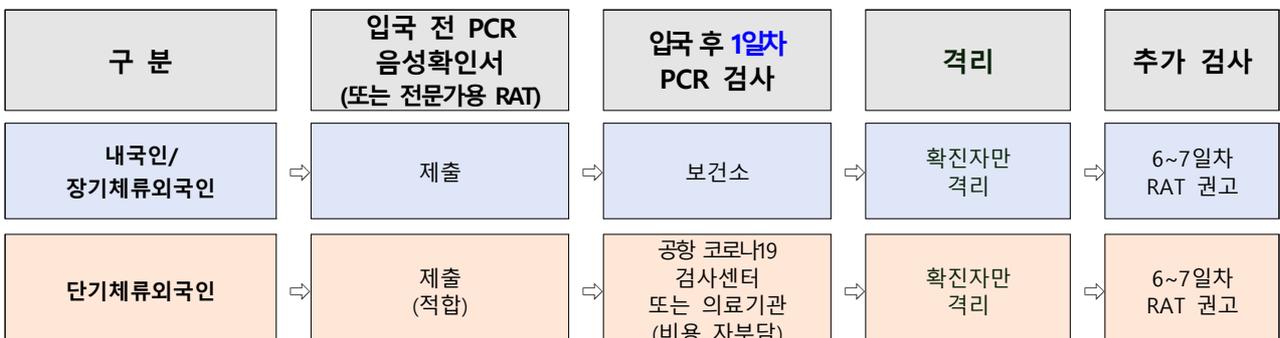
- ◆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 * 도착 후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 ※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질병청 공지사항 내 ‘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 향후 향만 확대 예정
 - Q-CODE시스템 이용자는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별도 제출서류 없음)
 -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2. 검역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 무증상자



3. 입국검역

- ◆ 대한민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검역정보 입력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별도 제출서류 없음)
 - * 발급받은 QR코드는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
- ◆ 입국 후에는 1일차 PCR검사를 받고, PCR검사 결과를 큐코드 누리집에 등록
 - * (등록 방법) 누리집 접속(<https://cov19ent.kdca.go.kr>) → '입국 후 검사 등록' 클릭

가. 검역조사

- (대상)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주요 조치사항
 - (기본사항)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질문서[서식 1] 등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 후 입국절차 수행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건강상태 확인
 - (입국서류확인) 건강상태질문서 및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제출 확인
 - (안내사항)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수동감시 안내문' 배부[부록 1]
 - *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 (입국 후 검사) 체류자격에 따라 입국 후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에 등록
 - *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비용 본인부담)
- ※ 여권을 확인하여 내·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 입국심사 확인증(출입국 발급),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인지 여부 구분(본인 입증 책임)

나. '음성확인서' 확인

○ (대상)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①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②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③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 ④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본인입증책임)
- ⑤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 ⑥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음성확인서 소지하더라도 발열·호흡기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

○ (검역소) 입국시 'PCR(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음성확인서' 수령 및 확인 - (인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한 것으로 봄

구 분	적합 기준
①검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p>※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p>
②검사 및 발급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R음성확인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전문가용 항원검사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
③필수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영유아 입국)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함
 - * 보호자 미동행 만 6세 미만 영유아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함
-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제한되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
 - * 음성확인서 적합기준에 맞지않은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도 미제출자로 간주함
 - ** 「검역법」 제12조, 제24조,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 * (장기체류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 소지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부적합 등(미소지 포함) 확인 시, 검역소에서 법무부로 입국 불허 요청서[서식 2] 작성하여 신병 인계
 -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미소지한 장기체류외국인은 단기체류외국인과 동일하게 조치
- (사후관리) '음성확인서' 위·변조 의심될 시 해외출입국관리팀에서 검역소 및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정보공유
- (현황보고) '음성확인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메모보고

다. 입국절차

- (기본원칙)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정보 확인 및 명단통보 등 실시
 - ① (검역정보 확인) 입국자 발열 여부, 건강상태 정보 등 확인
 - (Q-CODE 이용자) 발급받은 QR코드를 제시하고, 검역관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입국자 정보 확인
 - (Q-CODE 미이용자) 건강상태질문서, PCR음성확인서 등 서류를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검역관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국자 정보 직접 입력*
 - * 입국 후 1일차 검사로 전환됨에 따라 Q-CODE 미이용자 정보 신속히 입력
 - ② (명단통보) 입국자 정보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로 제공
 - * (지자체 확인방법)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해외입국자 관리
- (일일상황 보고) 검역소는 일일상황을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보고

4.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유증상자 기준) 입국일 기준 21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 *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라 입국일 기준 21일 이내로 설정
 - **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 (유증상자 검역조사) 증상분류 후 검체채취 및 검역소 격리관찰 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 발열 체크,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한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자 분류
 - *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하고, 해열제 복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감안하여 검역관이 유증상자로 분류 가능
 - ** 건강상태질문서 등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하면서 검역정보 확인 병행
 - ※ 항공기 입항 전 발열 또는 호흡기질환 유증상자 발생 신고 시, 항공사와 협의하여 의심환자 선(先)하기 조치하여 검역조사 수행 v
 - 유증상자 분류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등으로 이송
 -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실시
 - *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 검역소 검체채취 후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자가대기 가능
 - 상태가 중증이상인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 이송 조치
 - * 검역소 소재지 119 신고 고려

[(참고) 중증도 분류기준]

*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제13판) 참고

단계	정의	현행 중증도 분류
1	일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	경증이하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산소치료(O2 with nasal prong)	중등중
4	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	
5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	위중증
6	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organ failure/ECMO/CRRT)	
8	사망(death)	사망

○ (유증상자 검역조사 시 역할)

- (검역관)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외(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와 상의 후 별도의 격리공간(실)로 함께 이동
 - * 검역관은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필요시 안면보호구, 가운, 레벨D 등 착용)
 -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외(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확진자 다수 발생 등)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기초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외) 기초역학조사[서식 5] 후 PCR검사 실시
 -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유증상자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채취 후 PCR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격리관찰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수행
 - * 역학조사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D) 착용
- (검체채취자) 시설격리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검체채취 완료자의 여권에 별도의 스티커로 부착하여 구분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재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 *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VI.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
- (음성)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입국후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 (미국 외교관(A1) · 관용여권(A2) · 주한미군(A3)) 소속부대에서 인계 후 PCR 검사 실시, 주한미군(A3)은 자체 관리

5. 무증상자 검역조사 · 조치

- (검역조사)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통한 증상 분류
- (무증상자 검역조치) 1일차 PCR 검사의무, 6~7일차 RAT 실시 권고
 - ※ 여권을 확인하여 내·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 입국심사 확인증(출입국 발급),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인지 여부 구분(본인 입증 책임)

①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 *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자택 또는 숙소 대기
 - ※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군부대에서 인계 후 검사 및 자체 관리
- 입국 후 6~7일차에 전문가용 또는 자가검사 등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비용 본인부담)
 -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② (단기체류외국인)

-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실시(비용 본인부담)
 - *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자택 또는 숙소 대기
- 입국 후 6~7일차에 전문가용 또는 자가검사 등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비용 본인부담)
 -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6. 입국 후 검사 관리

- (입국자 검사결과 등록) 입국자가 큐코드 누리집에 접속*하여 입국 후 1일차 검사 결과 직접 등록

* 큐코드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 → 입국 후 검사 등록 →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 입력 → 검사 결과 입력(검사결과지 또는 검사 기관 발송 문자 업로드)

※ (검사 기관 발송 문자) 성명, 검사 방법, 검사 결과, 검사 기관명이 확인가능한 문자

- (입국 후 검사 모니터링) 보건소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입국 후 1일차 검사 결과 모니터링 및 검사 결과 미등록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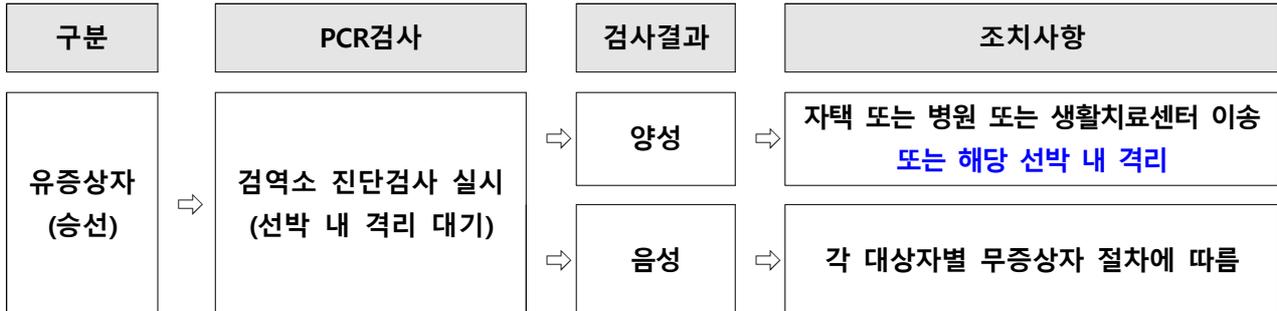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 해외입국자 관리

** ‘해외입국자 관리’ 화면에서 인터넷 사용 미숙자 등 검사결과 등록 지원 가능

IV. 항만 검역대응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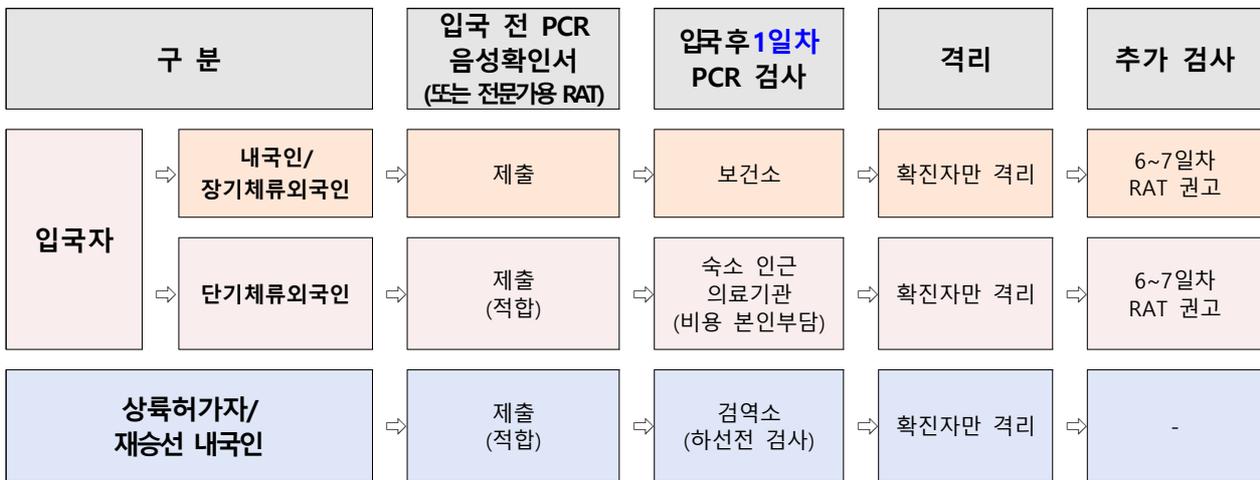
1. 항만 검역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 유증상자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입국절차(하선자) 진행

□ 무증상자



※ 음성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 검역소에서 실시하는 하선 전 검사는 입국 후 1일차 검사로 같음함

※ 재승선 내국인은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또는 숙소에서 대기

※ 하선자 용어정의

- **입국자** : 하선자 중 선원교대 등의 사유로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는 내·외국인
*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재승선 하는 사람은 입국자로 보지 않음
- **상륙허가자** : 하선자 중 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 **재승선 내국인** :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 했다가 선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국인

2. 검역조사

가. 승선·비승선 검역

- (승선검역) 선박 입항시 검역관이 승선하여 전 선원 및 승객*의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의 검역조사 실시

* 승객: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감독관, 선원의 가족, 선박의 작업 등의 사유로 승선하는 관광객 이외의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선원과 동일하게 조치

※ 검역관은 승선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안내

◆ 승선검역 대상 [서식 7]

- ①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 발생 신고 선박
- ② 입항일 기준 선원교대 등으로 14일 이내 승선자가 있는 선박
- ③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유효기간 만료 포함) 미소지 선박
- ④ 기타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선박

- (비승선 검역) 승선검역을 제외한 그 외의 경우, 서류심사 또는 「검역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조사생략 선박의 경우 전산을 통한 검역조사 실시

* 군용 운송수단의 경우 부록6 절차에 따름(관계부처 간 별도협의)

- 검역관은 서류심사로 신청한 선박 중 승선검역 대상 선박으로 판정시 '불합격' 처리 후 승선검역으로 전환하여 검역조사 실시

나. ‘음성확인서’ 확인

○ (제출 대상)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에서 승선한 인원

-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가능
- ① 국내 입항 계획이 없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피항 사유로 입항한 경우
 - ② 기타 입항 계획이 없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판단
 - ③ 국내항에서 출항 후 공해 또는 연안국에서 지정한 해상에서만 머물렀던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내·외국인)

○ (검역소) 입국시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수령 및 확인

* 운송수단의 장(또는 선사 등)이 국내 입항전에 관할 검역소로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사전 제출가능

- (인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한 것으로 봄

구 분	적합 기준	
① 검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발급시점	PCR 음성확인서	출항일(또는 승선일) 0시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
	예시(선원 기준)	* 예시 3.10. 10시 출항시, 3.7. 0시 이후부터 출항전까지 발급된 서류이면 인정
	전문가용 항원검사	출항일(또는 승선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예시(선원 기준)	* (예시) '22.5.23. 10:00시 출항(또는 승선) 시,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
③ 필수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 검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⑤ 발급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또는 선사 등)이 사유 증명 시 인정가능

- ① 날씨 및 파고 등에 의한 기상악화 및 자연재해로 출항 연기
- ② 운송수단의 고장 등으로 출항 연기
- ③ 기타 검역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항이 연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조치)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및 해당 선박의 경우 다음의 조치사항에 따르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
 - * 음성확인서 적합기준에 맞지않은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도 미제출자로 간주함
 - ** 「검역법」 제12조, 제29조, 제39조, 제4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진단검사) 미제출자에 대한 PCR검사 실시, ‘음성’ 확인 후 작업 가능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하선 희망자는 검역소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하선(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선박대기)
 - (단기체류외국인) 미제출자는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하선 금지
- (차항지 확인) 차항지가 국내항일 경우, 차항지 관할 검역소에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사항 등 관련내용 정보 공유(하선금지 조치 유지)
- (현황보고) ‘음성확인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메모보고

다. 입국절차

- (기본원칙) 모든 하선자 대상 검역정보 확인 및 명단통보 등 실시
 - ① (검역정보 확인) 모든 하선자에 대해 특별검역신고서 징구 등을 통해 국내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확인
 - * 보안구역 내 작업을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은 제외
 - ② (명단통보) 검역소에서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후 연락처, 한국내 거주 주소, 입국일 등 '해외입국자 관리 화면' 에 입국자 정보 직접 입력하여 지자체로 공유
 - * (지자체 확인방법)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해외입국자 관리
- (장소 등) 검역소장은 각 관계기관(지방해양수산청, 지방출입국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구역 내 장소 및 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
 - * 선사나 해운대리점이 선원과 항만 내 근로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해당 지정구역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이동시 마스크 착용 필수)
 - ※ 입항 24시간 전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제출 시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정 검역 시간대 및 장소 사전 공지
- (일일상황 보고)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

◆ 고위험국 發 선박 대상 국내 선원교대 금지(단, 내국인 선원은 입국 허용)

- 러시아, 필리핀에서 기항하고, 14일 이내 선원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국내 선원교대 금지(중대본회의, '20.10.31.~)
- 국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필리핀은 해제, 러시아만 금지 조치 유지(관계부처 회의 '22.3.17.~)

3.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유증상자 기준) 발열(37.5℃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모든 하선자 대상)
- (유증상자 검역조사) 증상 분류 후 임시 격리 및 검체 채취 실시
 - * 유증상자는 검역조사 중 마스크 상시 착용
 - 발열확인* 및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한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 후 유증상자 분류
 - *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하고, 해열제 복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감안하여 검역관이 유증상자로 분류 가능
 - ** 건강상태질문서 등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하면서 검역정보 확인 병행
 - 유증상자 분류 후 검역관이 선박 내 독립된 공간에서 검체채취
 - 검체채취 후 유증상자는 PCR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박 내 개인 선실에서 격리 대기
 - ※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상태가 중증이상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 가능(필요시, 관할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병상 배정 요청)
 - ※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은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제13판)’ 참고
- (유증상자 검역조사 시 역할)
 - (검역관)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를(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와 상의 후 별도의 격리공간(실)로 함께 이동
 - * 검역관은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필요시 안면보호구, 기운, 레벨D 등 착용)
 -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를(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 (확진자 다수 발생 등)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 기초역학조사[서식 5] 후 PCR검사 실시
 - * 역학조사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D) 착용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재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또는 해당 선박 내 격리

*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VI.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

- (음성)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하선전 또는 입국후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선박조치) 유증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 및 선원교대 등 가능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검역조사)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통한 증상 분류
- (무증상자 검역조치) 하선자* 전원 1일차 PCR 검사의무, 6~7일차 RAT 실시 권고

* 하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외 검역소장이 PCR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포함되며, 다만, 보안구역 내 작업자는 제외

※ 응급환자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로 대체

※ 여권을 확인하여 내·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 입국심사 확인증(출입국 발급),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인지 여부 구분 가능
(본인 입증 책임)

①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자택 대기

- 입국 후 6~7일차에 전문가용 또는 자가검사 등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
(비용 본인부담)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② (단기체류외국인)

-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비용 본인부담)

- 입국 후 6~7일차에 전문가용 또는 자가검사 등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비용 본인부담)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③ (재승선내국인)

- (PCR검사) 재승선 내국인은 관할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 검체 채취,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또는 숙소 대기

* 백신접종 목적의 내국인 선원 상륙자(검역소에서 검체채취)는 하선 전 진단 검사 방법을 신속항원검사(RAT)로 대체 가능

- 단, 내국인 선원 상륙자가 재승선했다가 다시 상륙하는 경우에는 하선 전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외출 당일 자가검사 실시, 당일 법무부 심사 원칙)

④ (외국인 상륙허가자)

- (PCR검사) 상륙자는 관할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검사(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선박 내 대기), ‘음성’ 확인 후 하선
 - * PCR검사에서 ‘음성’ 확인 후 상륙한 인원이 재상륙을 희망하는 경우(외출 당일 자가검사 실시, 당일 법무부 심사 원칙)에는 하선 전 진단검사 방법 신속항원검사(RAT)로 대체 가능

5. 검역조사증 발급

- ※ 항만 입국자, 재승선 내국인이 입국후 1일차 PCR 검사 후 그 결과를 자가 또는 숙소에서 대기가 가능한 바, 기존 검역확인증 대신 검역조사증 발급
- ※ 추후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입국자, 재승선 내국인이 선박에서 검사 결과 대기 시 검역확인증 발급으로 전환 가능

- (검역조사증) 검역관에게 발급받은 검역조사증은 법무부(지방출입국관서) 심사 시 제시하여 서류 및 건강상태 확인이 되었음을 증빙
 - ※ 지자체 단계에서 입국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고 잠복기가 지난 경우 코로나19 검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 (유효기간) 선박 내 감염우려로 72시간(3일) 적용하며, 유효기간 내에 입국심사(상륙포함)를 받아야 함(RAT는 당일 법무부 심사)
 - * 단, 전 선원 PCR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없음(확진자 발생 선박 내 동승선원이 수동감시 기간중 하선하는 경우에는 72시간 적용함)
- (발급절차) 수령인이 수령날짜를 검역소에 통지하면 검역소는 해당날짜 내에 검역조사증 수령가능시간을 알리고, 해당시간 내에 수령인 방문 시 발급
 - ※ 다만, 수령인이 통지한 날짜에 방문 못할 경우 사전에 검역소에 날짜 변경 통지 필요
- (수령) 선사나 해운대리점에서 대리 수령 가능

6. 입국 후 검사 관리

- (입국자 검사결과 등록) 입국자가 큐코드 누리집 접속*하여 입국 후 1일차 검사 결과 직접 등록
 - * 큐코드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 → 입국 후 검사 등록 →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 입력 → 검사 결과 입력(검사결과지 또는 검사 기관 발송 문자 업로드)
 - ※ Q-CODE 입국후 등록 시 문자에는 성명, 검사방법, 검사결과, 검사기관명 기재 필요

- (입국 후 검사 모니터링) 보건소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입국 후 1일차 검사 결과 모니터링 및 검사 결과 미등록자 안내**
 -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 해외입국자 관리
 - ** ‘해외입국자 관리’ 화면에서 인터넷 사용 미숙자 등 검사결과 등록 지원 가능

V.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 ▷ 기존 검역소에서 수행하던 진단검사는 질병대응센터에서 수행
 -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질병대응센터로 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단, 센터 내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 * 기타 행정사항은 검역소-센터 간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
- ▷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RAT 방법) 전문가용 또는 자가검사(비용 본인부담)

가.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 실시

- (검체채취 장소) 검체 채취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격리시설, 선내 등)
- (검체종류) 상기도 검체(권장),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 * 경증인 경우 상기도 검체만 채취
 - ※ [부록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관리’ 참조
- (상기도 검체) 비인두도말물 또는 구인두도말물 채취
 - * 비인두도말물을 우선적으로 채취하되,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 채취
- (하기도 검체) 가래가 있는 경우 채취(가래 유도 금지)
- (개인보호구)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 D) 착용[부록 3]
 - ※ 검체 채취시마다 장갑을 교체하고 알콜로 소독
- (검사의뢰) 검역소는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진단검사 의뢰(공문 등)
 - * 검체 의뢰시 검사의뢰 관리대장[서식 8]을 작성하여 질병대응센터로 송부
 - ** 관할 질병대응센터에서 해외출입국관리팀(메모보고)으로 실적 송부

- (검사수행) 질병대응센터에서 진단검사 수행(필요시 수탁기관 활용)[서식 9]
 - *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 (결과회신) 질병대응센터는 검역소로 진단검사 결과 회신(공문 등)
- (양성 확인)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질병대응센터에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보고(유선보고 등)
 - * 단, 검역소에서 수탁기관에 진단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양성 확인 시 검역소에서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으로 유선보고
- (양성보고) 양성인 경우 24시간 이내 보고해야 하며, 당일 보고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
- (최초 양성 판정시)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 후 최초 양성 판정 시 방대본 진단총괄팀으로 잔여검체 송부하여 재검사 후 최종결과 판정

나.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임시 격리

※ 유증상자 등 감염병의심자 중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에서 임시격리 시 적용하며, 격리시설 운영은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 지침」에 따름

○ (격리 장소)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및 지정 임시격리시설

* 선박 하선자의 경우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선내에서 대기하며, 선사나 해운대리점 관리자의 인솔하에 마스크 등 착용 후 이동

- 임시격리 장소로 이송 시 검역관은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및 장갑을 착용하고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마스크 착용 유지함

- 해당 검역소에서 격리관찰시설(실)이 부족할 경우 인근 검역소 시설 공동 이용 * 격리시설 운영 인력 등 검역소간 협력 운영

- 격리대상자 다수 발생으로 자체 격리시설 수용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자체,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 (검역관) 각 검역소 임시격리 장소로 대상자와 함께 이동 및 해외 출입국관리팀으로 격리대상자 발생 메모보고(기초역학조사서 파일 첨부)

* 다수의 격리대상자 발생 시 격리대상자 관리대장(서식 10) 또는 일일상황보고로 같음

- (격리관찰자)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시설 내 임시 격리 조치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격리관찰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격리병상 배정요청 후 이송

** 격리대상자에게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배부[부록 4]

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검사결과별 세부사항) 검역관은 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안내 및 안내문 배부 등 보건교육 실시
 - (검사 음성)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입국후 및 하선전 PCR 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검사 양성)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요청* 또는 관할 시·도 담당자에게 중증도에 따라 병원(중증 이상) 또는 생활치료센터(경증) 배정 요청 및 이송(격리해제 등 관리는 이송한 시설규정에 따름)
 - * 재택치료는 국내에 거주지(또는 보건소에서 인정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검사 미결정) 추가 검사 실시하며, 미결정 2회 시 역학조사관(또는 공중보건의) 또는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여부 결정
 - (검사결과 보고) 질병대응센터에서 진단총괄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인적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출발지 등) 및 결과 보고
 - * 시스템 구축 전까지 별도 송부하는 양식으로 보고 수행
- ※ 검사확인서[서식 11]는 내국인에 한해 요청시 발급 가능, 외국인은 발급 불가

VI.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1. 확진환자 발생 보고 및 통보

- (환자 발생 보고)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 검역정책과,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으로 확진자 발생 상황 메모보고
 - * 건강상태질문서, 기초역학조사서 첨부
- (조치결과) 확진환자 이송(병상배정 포함) 및 접촉자 조사 결과 등 메모보고에 의견달기로 공유
- (환자 발생 통보) 검역소는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에 환자 발생 통보(접촉자는 공문 통보)
 -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병원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로 통보
 - * 확진자 탑승 선박이 회항 또는 자진출항하거나 확진자를 해당 선박 내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는 통보 불요
- (관련 자료 공유) 확진자의 건강상태질문서 및 기초역학조사서는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로 FAX 또는 공문 전송
- (통보방법) 프로그램 내 ‘비고(특이사항)’란에 “①검역소명, ②입국일, ③방문국가, ④국적, ⑤체류기간” 등 작성 후 통보

2.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요청

○ (분류요청) 검역소는 확진자 확인 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재택 치료 대상자 분류 요청(기초역학조사서 첨부)

※ 단, 아래 해당자는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

- ① 입원요인이 있는 자
- ② 소아·장애·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 ③ 거주지가 제주도로 육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입원 고려 위험요인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무증상이거나 재택기준에 부합하는 경증이면서 환자가 재택치료를 희망할 경우,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재택치료로 분류 가능

◆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산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 (대상자 결정) 요청 받은 보건소는 재택치료 가능 여부 평가하여 의뢰한 검역소로 평가 결과 회신

○ (결정에 따른 조치) 재택치료자는 자택으로 이송 요청

3. 격리병상(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 (검역관)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확진자의 경우, 시·도 연락담당관으로 병상 배정 요청, 이송 담당관 연락처 공유
 - * 각 기관 담당자와 유선통화 후 기초역학조사서 사진 전송
 -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역(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임시 격리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적용
- (시·도 연락담당관) 지역 내 병상 배정여부 확인 및 해당시설에 병상(실) 가동준비 요청, 병상 배정 결과 및 담당자 번호 검역소에 공유

< 검역단계 확진자 치료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절차_중수본 제공 >

○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

- (인천공항)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병상배정 요청

* 다만, 확진자 중 급격한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인천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에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서울, 인천, 경기 지역 환자일 경우에는 '수도권 긴급대응반'에 공유) * 중수본-1994호(2021.1.18.) 참고

- (기타 검역소) 검역소 소재지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환자 병상배정 후 이송, 검역소 소재 시·도에 중환자 병상 부족 시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원 지원 요청

○ 무증상·경증 확진자

① 공항 입국자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장거리 이동이 요구되거나 거주지 소재 병상 배정이 어려운 경우(예. 제주도민),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또는 검역소 소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 (외국인)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장·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하고, 인천공항 외 공항의 경우에는 검역소 소재지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인천공항 확진자 이송)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인천소방본부에서, 그 외 지역의 이송은 시·도에서 담당

② 항만 입국자

- **(거주지가 있는 내국인)** 거주지 관할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
 - * 거주지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소재지 관할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 검역소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외국인)**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검역소 소재지 관할 시·도 연락 담당관에게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 해당 시도 병상 배정이 곤란한 경우, 검역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 시설팀)으로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요청 가능

4. 확진환자 이송 및 인계

가. 확진자 이송

- (재택치료 대상자 이송) 자차 및 방역택시 이용하여 귀가
- (재택치료 불가자 이송) 병원생활치료센터에 확진자 이송 및 도착시점 유선알림
 -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KF94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Level D 수준의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구급차 운전자는 개인보호구(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
- (재택치료 불가자 인계) 이송요원은 병원(생활치료센터) 도착 시 의료진에게 기초역학조사서 사본 및 확진환자 인계(의료진에게 환자 건강상태를 설명)
 - ※ 검역소 구급차가 없을 경우, 지원 구급차(보건소 또는 119구급차) 이송요원에게 기초역학조사서 사본 인계 및 환자 상태 설명

◆ 확진자 이송수단 및 방역수칙 안내

- (이송수단) 검역소·보건소·119·민간운영 구급차 또는 개인차량(본인·동거가족 운전) 및 방역(일반) 택시 이용 가능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송
 - * 개인차량 및 택시 이용시 유의사항 : 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운전자 및 환자 외 탑승자제
- (방역수칙) KF94 동급 이상이 마스크 및 장갑 착용, 환자 뒷좌석 대각선에 착석, 신체 접촉 및 차내 음식섭취 금지, 하차 후 차내외 표면소독, 운전시 창문개방, 격리장소 외 경유 또는 하선금지
 - * 개인차량, 방역택시 등 확보가 불가한 경우, 일반 택시 탑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나,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제한함

나.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항만)

- (조치사항)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회항을 원칙으로 하되, 회항이 불가하며 재택(또는 보건소 인정 장소)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조치(이동금지 및 격리통지서 발부)
 - * 확진자 격리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시)까지
 - * 선내 격리중 증상 악화 등 필요시 병원진료 가능(선사 또는 해운대리점에서 사전에 의료기관으로 확진자임을 알리고 진료가능 여부 문의)
- (확진자 하선)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하선 가능(격리해제 이후라도 불요불급한 상륙은 제한)
- (하역작업 등)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 및 선원 교대 등 가능
- (추가검사) 확진자에 대한 추가 검사는 불요

◆ 확진자 발생 선박 입항 시 조치사항(확진자가 선박 내 탑승)

- 검역소장 판단하에 진단검사, 격리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진단검사 및 격리 불요함(작업 및 선원교대 가능)
 - 입항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PCR검사 또는 전문가 RAT 결과 ‘양성’)되고,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 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기간 산정 기준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VII.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조사

-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진단검사 등 고강도 입국자 관리 및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역량을 고려하여 검역단계 접촉자 조사 체계 변경
 - (공항) 기내접촉자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
 - (항만) 국내 접촉자(항만근로자 등)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동승선원에 대한 조사는 지속)
- ※ 단, 신규 변이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재개 가능

2. 확진자 발생 선박 내 동승선원 및 운송수단 관리

- (동승선원 관리) 확진자 발생 선박에 손소독제·마스크·장갑 등을 배포하고,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실시
 - * 확진자 발생 시, 동승선원은 전원 검역소에서 PCR검사 실시
- (수동감시) 6~7일차에 RAT(자가검사) 권고 및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 검역소로 신고하도록 안내
 - *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RAT(자가검사) 실시 하며, 양성인 경우 PCR 실시
- (입국자 관리) 입국자는 반드시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검사 실시, ‘음성’ 확인 후 하선조치(수동감시 기간중 불요불급한 상륙 자제)
 - * 이전에 실시한 PCR검사에서 ‘음성’ 확인 후 72시간(3일) 미경과시 추가검사 불요
- (운송수단 관리) 해당 선박에 대한 이동금지 및 소독 조치
 - * 소독 완료 후 이동금지 해제 가능
- (하역작업 등) 선원과 항만근로자 간 접촉을 삼가고, 작업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국외출항) 확진자가 선내 격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 선사 등에서 국외출항(회항 등)을 희망할 경우 출항 시 IHR 통보*
 - * 국제협력담당관 및 해외출입국관리팀에 메모보고로 해당 선원 성명(영문명), 국적, 여권번호, 확진자 발생일, 차항지 도착예정일 등 관련 정보 공유

3. 검역관리대상자 검역조치 [부록 5]

※ 검역관리대상자 : 역학조사팀에서 확진자의 접촉자 중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검역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자

- (출국 시) 검역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공받은 검역관리 대상자 출국정보를 해외출입국관리팀에 공유(메모보고 또는 업무쪽지 등)
- (입국 시) 검역관리대상자 검역수행 후 ‘검역확인증’ 제공, 조치 사항 내용 해외출입국관리팀에 보고(메모보고)

VIII. 기타 행정사항

- (행정조치)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의사환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통보 및 소독명령, 이동금지 등 조치, 소독이행여부 확인
 - (관계기관 협조요청) 항공사,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공·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에 이송환자 이송 및 입국수속 조치를 위한 협조 요청
 - 격리로 인한 항공권 변경 등 요청 시 관련업무는 항공사와 협의
 - (검사결과 확인) 격리병원으로 이송 시 PCR검사 결과 확인 절차는 해당 병원과 사전협의
 - (이송수단 등 소독) 공·항만 내 이송환자 이동 동선에 따른 검역구역 및 격리시설(실), 이송수단 등 소독조치 및 확인
 - 코로나19 관련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및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지침」, 「입국자 임시격리시설(실) 소독 안내」에 따라 소독 실시
 - (폐기물 처리) 환자 이송 시 사용한 개인보호복은 탈의 후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 격리시설(실)의 경우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 지침」, 「입국자 임시격리시설(실) 소독 안내」에 따라 폐기물 처리
 - (검역관/지원인력 감염주의) 현장검역, 검체채취 등의 업무 수행 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위생관리 철저 수행
 - 검역인력 : 의사환자 관리 등의 업무수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현 시 검역소장 보고 후 진단검사 실시,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권고
 - 검역지원인력* : 해당기관 담당자가 개인별 건강관리, 유증상자·접촉자 등 확인 시 담당검역관에게 신고
- * 검역지원인력에 대한 진단검사는 유증상 발생 시 역학조사 후 수행하고, 무증상의 경우에도 지원해제시 원 소속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실시할 수 있음

○ 공·항만 상주기관 직원 감염관리

- 유증상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 발생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수행

○ (PCR 재검출자 사례) 국내·외 기확진력이 있는 해외입국자가 검역 단계에서 PCR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재검출 사례정의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 (재감염 추정)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 (사례판정) 사례정의에 따라 단순 재검출, 재감염 추정사례 판정

- 판정 주체 : 역학조사관 또는 역학조사관 교육을 받은 공중보건의
-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해외입국자 중 국내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된 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코로나19 검사결과지 또는 의무기록)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증명서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① 검사방법은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이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것
 - ②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③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환자관리) 단순 재검출의 경우에는 ‘음성’ 과 동일한 조치, 재감염 추정사례의 경우에는 ‘양성’과 동일하게 조치함

* 미결정자가 단순재검출로 판정된 경우에는 검사결과 판정을 위한 추가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보고·통보) 확진자 통보 시 사례판정 결과 포함

○ 제출서류별 보관기관

- 특별검역신고서 · PCR음성확인서 : 1개월

* 건강상태질문서의 보존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불허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Full nam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하여, 위 승객은 검역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입국불허를 요청합니다.

요청사유

- ① 연락처 현장수신 확인 불가 []
- ② 격리거부, 격리비용 납부거부 등 시설격리 조치 불응 []
- ③ 부적정 '음성확인서' 확인 []
- ④ 기타 사유 []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국립 _____ 검역소장 (직인)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 앞면 >

특별검역 신고서
Travel Record Declaration

성명 Name(姓名)	성 이름	생년월일 Date of Birth(出生日期)
국적 Nationality(国籍)	항공기·선박명 Flight·Ship No. (航空·船舶)	
여권번호 Passport No.(护照号码)	도착 연월일 Date of Arrival(到达日期)	
입국일자	기 확인일자	

한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韩国联系地址) ※ 실제 거주할 주소를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
※ Please write current residential address(full address). (请填写在韩实际居住的详细地址。)

휴대 전화번호 Mobile Phone No.(手机号码)	전자우편주소 E-Mail(电子邮件)
--------------------------------	---------------------

최근 14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

Please list all countries you have visited within 14 days prior to arrival.
(请填写过去十四天之内停留过的国家。)

출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Please list the country you departed.)
请填写出发国家名称。

본 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ursuant to Articles 12 and 39 of the Quarantine Act, making any false statements concerning your information or failing to fill out this Declaration Form is a criminal offense punishable by one year of imprisonment or less or a fine of up to 10,000,000 KRW.

若回避或虚假填写本调查表, 依据「检疫法」第十二条及第三十九条规定, 可被处以一年以下的徒刑或一千万韩元以下的罚款。

작성일 2022 년 월 일
Date (日期) (MM/DD/YYYY)

작성인 (서명 또는 인)
Completed by (签字) (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国立检疫所长 敬启)
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
Quarantine-covid19 defence(Q-CODE) system
Guideline



< 한국어 >

< English >

▷ **이용대상 : 공항 국제선 입국자**

USE TARGET : Arriving at International Airport from overseas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승객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이용하여 입국 전에 검역 정보를 입력하면 입국 후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는 Q-CODE에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QR코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격리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입국 시 발급받은 QR코드를 검역관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ssengers entering Korea from overseas can promptly receive the quarantine service by inputting their quarantine information using the Q-Code before entry. Those who completed vaccination could be exempt from quarantine if they'd received a QR code after inputting their vaccination history on to the Q-Code.

Please present your QR code issued upon entry to the quarantine officer.

* 항만은 향후 확대 예정(with future plans of extending to ports)

검역 확인증

Health Screening Certificate

성명(Name):

본 검역확인증 소지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 대상자로 검역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es that the holder has completed COVID-19
screening measures including temperature check and
submission of Health Declaration Form.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Valid date) (yy) (mm) (dd)

발급일 : 년 월 일
(Issue date) (yy) (mm) (dd)

검역관 성명 : (서명)
(The Quarantine Officer Name) (Signature)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KDCA

검역 조사증

Health checking Certificate

성명(Name):

체온확인(temperature check) : ℃

본 검역조사증 소지자는 코로나19 검역 서류 및 발열체크를 통해 건강상태(무증상)를 확인하였으며, 입국후 지정된 장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This certifies that the holder has been checked health status(no symptoms) through temperature check and submission of COVID-19 Health Documents. The holder should undergo PCR test after entering the country at a designated place.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Valid date) (yy) (mm) (dd)

발급일 : 년 월 일
(Issue date) (yy) (mm) (dd)

검역관 성명 : (서명)
(The Quarantine Officer Name) (Signature)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KDC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서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1.1 성명		1.2 주민등록번호	-	1.3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1.4 국적	<input type="checkbox"/> 국내 <input type="checkbox"/> 국외 ()	1.5 거주지 주소			
1.6 연락처 (보호자)	- -	1.7 직업 (직장명, 학교명)			

2. 발생지역 여행력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2.1 최근 14일간 방문 지역 및 기간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2 여행 목적	<input type="checkbox"/> 관광 <input type="checkbox"/> 업무(출장) <input type="checkbox"/> 해외근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2.3 입국 시 경유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3.1. 입국시 경유지	입국 경로: - - - -
	항공편/선박명: - - - -
2.4 입국 일시	경유지 공항 밖 출입 여부: <input type="checkbox"/> 출입함 (출입한 공항:) <input type="checkbox"/> 출입안함 년 월 일 시 항공편/선박명 ()

3. 임상증상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3.1 최초증상	<input type="checkbox"/> 발열 (주관적호소, 마인저발열)	<input type="checkbox"/> 호흡기증상	<input type="checkbox"/> 비호흡기 증상	<input type="checkbox"/> 기타증상
3.1.1 발현 일시	월 일 부터	월 일 부터	월 일 부터	월 일 부터
3.1.2 증상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주관적 호소 <input type="checkbox"/> 미인저 발열 (체온: 1차 - °C 2차 - °C 3차 - °C)	<input type="checkbox"/> 폐렴 <input type="checkbox"/> 기침 <input type="checkbox"/> 가래 <input type="checkbox"/> 인후통 <input type="checkbox"/> 호흡곤란	<input type="checkbox"/> 두통 <input type="checkbox"/> 근육통 <input type="checkbox"/> 오한 <input type="checkbox"/> 콧물/코막힘 <input type="checkbox"/> 후각저하(후각상실) <input type="checkbox"/> 미각저하(미각상실)	<input type="checkbox"/> 구토 <input type="checkbox"/> 복통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
	3.2 증상 소실 여부	<input type="checkbox"/> 증상소실 <input type="checkbox"/> 증상지속 (증상소실일자:)	<input type="checkbox"/> 증상소실 <input type="checkbox"/> 증상지속 (증상소실일자:)	<input type="checkbox"/> 증상소실 <input type="checkbox"/> 증상지속 (증상소실일자:)
3.3 해열제 복용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마지막 복용시간: 월 일 시)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4 흡연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5 기저 질환(질병력)	<input type="checkbox"/> 예 (기저질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6 임신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주)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7 의료기관 진단	<input type="checkbox"/> 폐렴 <input type="checkbox"/> 급성호흡곤란증후군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흉부방사선촬영: <input type="checkbox"/> 예 (조건:)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역학적 연관성

4.1 동반자	<input type="checkbox"/> 단독(1인) <input type="checkbox"/> 2인 이상 여행(가족, 업무 등) (동행자: 명, 관계)
4.2 감염위험요인 (발병일로부터 14일 이내)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확진환자 접촉 환자이름 / 관계: , 접촉날짜 및 장소: ,
	<input type="checkbox"/> 급성 호흡기 증상자(발열, 기침, 폐렴 등)와의 접촉 접촉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현지 의료기관 방문 접촉일: 년 월 일, 방문사유:)
	<input type="checkbox"/> 코로나19 PCR 검사 여부 예: (음성/양성, 날짜:) 아니오
4.3 과거 코로나19 확진력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최초확진일: 년 월 일

중앙역학조사반 작성란

사례분류		<input type="checkbox"/> 확진환자 <input type="checkbox"/> 감염병 의심자 <input type="checkbox"/> 사례 '미해당'	
역학적 연관성	<input type="checkbox"/> 해외방문 ()	임상증상	<input type="checkbox"/> 폐렴 <input type="checkbox"/> 발열+호흡기증상
	<input type="checkbox"/> 확진환자 접촉		<input type="checkbox"/> 발열 <input type="checkbox"/> 호흡기증상
검역소 조치사항(중복기입)	<input type="checkbox"/> 시설 격리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input type="checkbox"/> 보건교육		
검체채취 구분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채취 <input type="checkbox"/> 검역소 격리시설 검체채취 <input type="checkbox"/> 검역소 내 검체채취 <input type="checkbox"/> 기타()		
담당 역학조사관	사례분류 일시	년	월 일 시

서식 6

격리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12. 30.>

[] 입원 · [] 격리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입원 · 격리 사유			
입원 · 격리 내용	입원일 · 격리시행일		
	입원기간 · 격리기간		
	입원 · 격리 장소	[] 병원 · 의원() [] 자택 [] 시설()	
	주소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p> <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이 통지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p> </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80px;"> <p>직인</p> </div> </div>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점검 항목

순서	점검 항목	검역조사 방법 분류
①	선내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승선검역
②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경우	승선검역
③	선박위생관리증명서(유효기간 만료 포함) 미소지 선박	승선검역
④	기타 검역소장이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선박 * 마스크 및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가능여부 고려 ※ 도선사 등 ‘검역 전 승선허가자’는 예외	승선검역

- 검역조사 방법

- (승선검역) ①, ②, ③, ④
- (전자검역) ‘①’ ~ ‘④’ 중 전부 “미해당” 인 경우

□ 점검 시점 : 입항 전 또는 변경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식 8

검사의뢰 관리대장 양식(엑셀작성)

* 향후 비용지급의 근거로 활용되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히 기재 필요

**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작성(비고에 여권번호 기재)

연번	의뢰일	성 (Surname)	이름 (Givennam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운송 수단명	검체 종류	의뢰기관명	판정결과	판정결과 통보일	인수자	인계자	비고
(예)	2020-03-01	홍	길동	REPUBLIC OF KOREA	yymmdd		상기도 또는 하기도		양성 또는 음성	2020-03-02			
(설명)	yyyy-mm-dd 형식 유지	성명 작성 - 내국인은 "한글명"으로 작성 - 외국인은 여권에 명시된 "영문명"으로 띄어쓰기 일지하게 작성	여권에 명시된 공식적인 국적(영문)으로 기재 -예 시)REPUBLIC OF KOREA EA(o) 대한민국(x) 한국(x) South Korea(X)	주민번호 앞자리 형식 (yymmdd)으로 6자리 기재		하나의 셀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기재 (★ 검체 1건을 기준으로 작성!!) 1명이상-하기도2건검사했을 경우, 상기도 각각 분리하여 작성 (셀추가하여 2줄로작성) - 구인두, 객담, 구비, 객 등으로 나열 표기 금지	미결정(indeterminate)은 데이터에서 삭제	yyyy-mm-dd 형식 유지					

격리대상자 관리 대장

NO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선(기)명	체류지역 (기간)	주소	입 실시 증상 (시작일)	입실일	퇴실일	격리실 NO.	이송현황
	홍길동(남) (1980.1.1)	KOREA	DONG-A (CHINA)	중국(7일)		발열, 인후통 (2018.1.1)	1.10	1.20	1	보건교육후 귀가조치

서식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자 조사 양식

순번	접촉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상세주소	접촉자구분	격리구분	내국인	국적	핸드폰	연락처	직업/장명 (학명)	최종접촉일	의환사유
	띄어쓰기 금지	생년월일 년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등록 숫자만 입력 (예시 : 20160905)	1:남 2:여	주소를 기준으로 시도 사군구 코드를 수기로 선택 매칭		01[의료진] 02[의료진 기타] 03[환자] 04[가족] 05[동료] 06[기타]	1[격리안함] 2[격리해제] 3[자가격리] 4[병원격리] 5[코호트 격리]	Y : 내국인 N : 외국인 반드시 국적입 력	내국인 항목 'N' 선택 시 텍스트 입력	숫자만 입력	숫자만 입력	텍스트 입력	숫자만 입력	Y : 예 N : 아니오
1	홍OO	19710101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1[의료진]	3[자가격리]	Y		0101234 1234	0212341 234	OO병원	20150630	Y
2	홍OO	19710102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4[가족]	3[자가격리]	Y		0101234 1234	0212341 234	OO학교	20150630	N
3	MOO	20010101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2[의료진 기타]	3[자가격리]]	N	중국	0101234 1234	0212341 234	OO기업	20150630	N
4	홍OO	20010103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4[가족]	3[자가격리]]	Y		0101234 1234	0212341 234	무직	20150630	N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수동감시 안내문

6월 8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의무격리는 해제하고,
입국한 날부터 10일간 수동감시로 전환합니다.(수동감시자 권고 수칙 준수)

* 시행일 이전 입국자 대상 소급적용(6.8. 일시 격리해제)

한국 도착 후 주의사항

-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한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제출

 - * 항만 입국자는 국내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에서 승선한 모든 인원 제출
 - * 공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으로 제출 확인(시스템 내 업로드)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실시

 - * 검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 ✔ 무증상자는 자택으로 이동하며,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받기(의무사항)

 - * 내국인 및 정기체류 외국인인 입국자 안내문,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한 후 관할 보건소 방문
 - ** 단기체류 외국인인 인천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 숙소 인근 의료기관 방문하여 PCR검사
- ✔ 입국 후 PCR검사 결과 큐코드 홈페이지(<https://cov19ent.kdca.go.kr>) 접속해서 등록하기

 - * ① '입국 후 검사등록' 클릭 → ②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자 입력하고 '조회' 클릭 → ③ 검사일, 검사결과 등 입력하고 검사결과지 업로드

수동감시자 권고 수칙

-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 ✔ 입국한 날부터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 자제하기
-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입국 후 PCR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2.7.2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13판(지자체용)」 참고

1. 검체 채취

가. 채취장소

-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

▶ 단, 선내 격리 및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나. 검체종류 및 포장

1) 검체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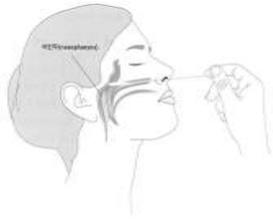
- ▶ 상기도 검체(권장),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 ▶ 경증인 자는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 의뢰

번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비고
1	상기도	▶ 비인두도말물	▶ 바이러스 수송배지 (VTM)에 채취	▶ 분리된 독립공간에서 채취 ▶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로 대체
2	하기도	▶ 가래	▶ (용기) : 멸균 50ml 튜브 ▶ (검체량) : 3ml 이상	▶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 ▶ 가래 유도 금지(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있음) ▶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래 채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에서 채취 (음압 시설이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
<p>*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부학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비인두까지 면봉 삽입이 어려운 경우 -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비인두도말 채취를 위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 -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p>※ 단순 통증·불편감은 해당하지 않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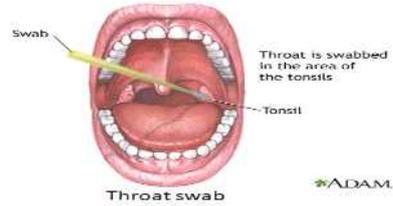
- (상기도 검체) 면봉을 이용하여 상기도 검체를 채취하고, 검체를 채취한 면봉을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 11]와 함께 수송

-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뺨 안쪽, 혀 뿌리 등이 아닌, 혀를 누르고 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하되, 분비물을 충분히 흡수하여 채취

[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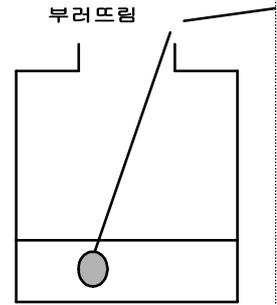
[구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출처: ADAM,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달한 면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함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에 보관
-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
- 검사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4℃ 유지)



- (하기도 검체)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가래 채취 방법]



1. 구강 세척



2. 무균용기 사용



3. 기침하여 가래 채취



4. 완전 밀봉(4℃ 유지)

2) 검체포장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시, UN 3373 표시, 방향 표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3중 포장용기(예시)]

구 분	1차 용기	2차 용기	3차 용기
포장용기			

다. 주의 사항

- 검체 채취 시, KF94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필요시 불투과성 일회용 앞치마 추가 착용)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및 검체 채취 후 소독 필수

2. 검사 의뢰

- (검역소) 검체의뢰 관리대장[서식 10]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
 - * 질병관리청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체 시험의뢰서[서식11] 작성,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해당기관 서식 사용
- (검역소) 검체채취 후 권역센터(진단분석과 실험실) 소관 실험실로 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3. 검체 운송

가. 검체운송 담당

- (질병대응센터에서 검사할 경우) 검역소 담당자나 검체운송기관이 질병대응센터로 운송
- (수탁기관에서 검사할 경우) 검역소 담당자나 수탁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검체 운송 담당자는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과 질병대응센터로 상황보고

나.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80℃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

다.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

- 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청) 준수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 (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 인원 잔류)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

4. 검사 기관

◆ 기관에서 실시한 확진 검사에서 최초 양성을 확인한 경우, 질병관리청과 2중 확인 필요 (최초 양성 1회에 한하며, 이후에는 검사기관 자체 양성 판정 가능)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검역소에서 의뢰한 검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

5. 검사 결과 보고

- (검사기관) 검사기관에서는 검사를 의뢰한 검역소 및 방대본 진단총괄팀, 해외출입국 관리팀으로 검사결과 통보(메모, 유선)
 - 검사결과는 검역관을 통해 대상자(조사대상 유증상자)에게 통보 및 설명

▶ 양성인 경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789, 7790)로 당일 보고

- 재검 필요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지침」과 「COVID-19 검사 Q&A」 최신판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정

- ▶ 해당 지침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최초 검사에서 미결정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

-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에 대한 판정이 연속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해제 여부 결정

□ 적용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응 과정 전반
 - 검역, 이송, 역학조사, 선별진료, 진료, 처치,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 검사, 수술, 기구 관리, 환경관리, 사체관리 등

□ 주요내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 선택, 착·탈의 및 주의사항, 의료폐기물로 배출



□ 사용 원칙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또는 공기매개주의)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
-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예: 환자 접촉 전, 격리병실 밖)
 -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
-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보관하지 말고 폐기
-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사용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상황별 권장범위

- 개인보호구는 호흡기, 눈, 손,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N95 또는 KF94 이상),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
-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
-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일회용 장갑 (Glove)	접촉	-손 오염 방지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질 선택 -파우더 알러지 있을 경우 파우더 없는 제품 또는 나이트릴 제품 사용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Gown)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튼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전신보호복 (Coveralls)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튼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덧신 (Shoe covers)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장화 (Boots)	혈액, 체액이 신발에 튀	-신발덮개 대신 착용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노출위험에 따라 선택	
모자 (Hair cap)	머리의 오염	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고글 (Goggle)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튀	-눈의 점막 오염 방지 -고글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 보관	
안면보호구 (Face shield)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튀	-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고글 대신 착용 -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호흡기보호구 :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적용상황 예 : • 의심/확진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 (의료 종사자,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 • 기침유도 시술 시 •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등	
호흡기보호구 : PAPR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한 감염원 흡입 방지 - 전지충전, 필터교환, 장비 소독 등 철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함 - 파손, 오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전 수리,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하면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구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¹⁾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검역	검역(검역조사)		●		●		
	검역(역학조사)		●		●	●	●
선별 진료소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		●	●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		●	●	●
이송	이송(구급차 운전자) ²⁾		●		●		
	확진/의심 환자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		●	●	●
	의심환자 동승 보호자	●					
진료	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	●	●
	에어로졸 생성 처치 ³⁾			● (선택 사용 가능)	●	●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	●
	호흡기 검체 채취		●		●	●	●
검체 관리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 ⁴⁾⁵⁾		●		●	●	●
	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			●		
장례	시신 접촉		●		●	●	●
	시신백 이송, 관 운구	●			●		
청소·소독	청소·소독 ⁶⁾		●		●	●	●
폐기물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로 제한.

- 1)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 보호복(덧신포함),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 2)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심폐소생술, 기관지내시경술, 기도분비물 흡인, 기관관리(tracheostomy care), 사체부검, 비침습적 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 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가래배출 유도 처치, 상황, 행위를 말함
- 3)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
- 4)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긴팔), 일회용 장갑 착용
Lee H, Ki C-S, Sung H, et al.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 Infection & chemotherapy. 2016;48(1):61-69.)
- 5) 병실, 구급차 등 청소·소독 시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방수성 앞치마 등 착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예시

- 긴팔가운을 포함한 4중(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 4종 또는 전신 보호복 충족 요건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4종	전신 보호복	
호흡기	일회용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	○	-
	PAPR(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필요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눈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	○	김서림방지 및 굽힘 방지 코팅 처리
전신 · 의복	일회용 전신보호복	○	○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일회용 장갑	○	○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	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앞치마		필요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

○ 개인보호구 4종 착의 예시 순서

				
<p>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p>	<p>2.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3. 가운을 입는다.</p>		
				
<p>4. 마스크를 착용한다.</p>	<p>5.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p>	<p>6.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p>		
				
<p>7.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p>				<p>8.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 (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p>

○ 개인보호구 4종 탈의 순서

				
<p>1. 장갑을 벗는다.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p>		<p>2. 속장갑을 착용한 경우 속장갑을 소독하고, 속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3.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p>		<p>4.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5. 고글 혹은 안면보호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한다.</p>	<p>6.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7. 마스크를 제거한다.</p>		
				
<p>8.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9. 속장갑(착용한 경우)을 제거한다.</p>			

□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원칙

○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 ▶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更衣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 상자에 바로 버림

안 내 문

1. 이곳은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입니다.
2. 감염병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이곳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으로 확인되면 지정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감염병이 아니라면 보건교육 후 귀가하게 됩니다.
3. 검역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외부 출입을 금합니다.
4. 식사는 퇴실 전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5. 검역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비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 이 격리시설은 금연구역이므로 건물 내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8. 다른 입실자를 위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될 경우 검역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안전 수칙

1.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관찰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uidelines for Quarantine Subjects

1. This is a **quarantine facility**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2. Wait here until your **infectious disease test results have been verified**.
 - ※ Patients testing positive for infectious disease will be **transferred to a designated hospital for treatment**, while patients testing negative will be able to go **home following a class on public health education**.
3. Patients are prohibited from going outside until a quarantine officer provides notification of test results.
4. Free meals are provided until leaving this facility.
5. For required assistance from a quarantine officer, please **call an officer by using one of the facility phones**.
6. Please be careful not to fall from the bed.
7. This facility is a **non-smoking area**. Please do not smoke inside the building.
8. Please keep the noise level down out of respect for other patients in the facility.
9. Please notify a quarantine officer upon the worsening of **fevers, coughing, breathing difficulties, and other symptoms**.

Health & Safety Rules

1. Please pay particular attention to **personal hygiene** by thoroughly washing and disinfecting hands.
2. If experiencing a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e.g. coughing, sore throat, and runny nose, please **wear a mask at all times** while inside the monitoring room.

隔离者须知

1. 这里是韩国国立检疫所隔离室。
2. 在传染病检查结果出来前，需在此等待。
※ 若确诊为传染病则移送至指定医院接受治疗，若未感染传染病则接受保健教育后即可回家。
3. 在检疫官通知检查结果之前，禁止外出。
4. 在隔离室期间，免费提供饮食。
5. 如需检疫官的帮助，请使用提供的电话进行呼叫。
6. 请注意不要跌落至床下。
7. 此隔离室为禁烟区域，请勿在建筑物内吸烟。
8. 请不要发出噪音打扰他人。
9. 若发热、咳嗽、呼吸困难等症状恶化，请告知检疫官。

健康安全守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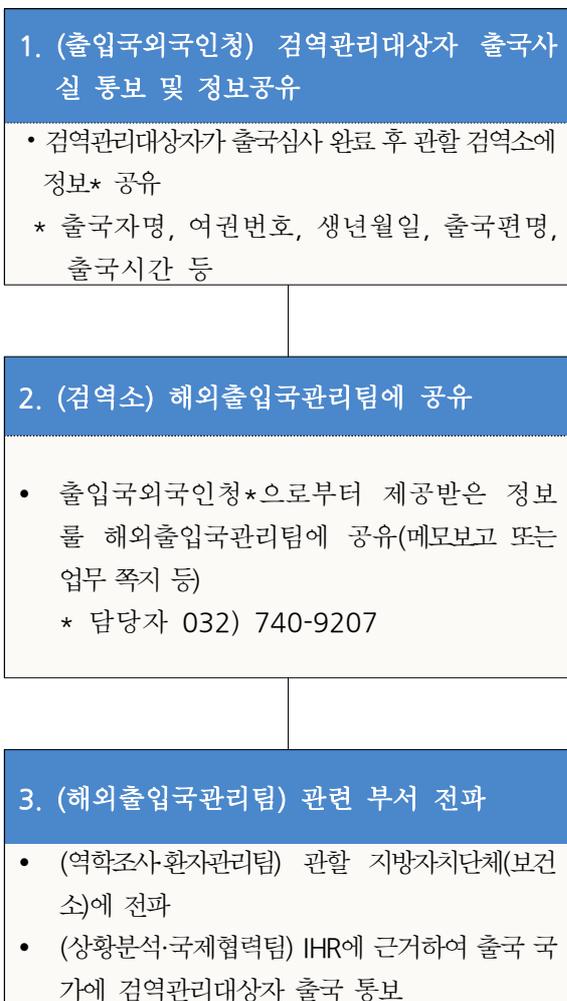
1. 务必注意洗手、手部消毒等个人卫生。
2. 若有发热和呼吸困难症状（咳嗽、嗓子疼、流鼻涕等），务必随时在观察室内佩戴口罩。

□ **검역관리대상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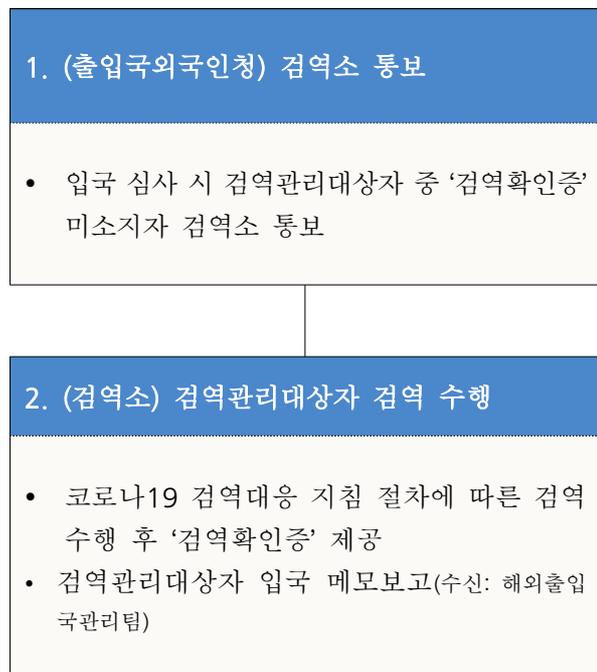
- (역학조사팀) 확진자의 접촉자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해외 출입국관리팀에 검역관리대상자 등록 요청
- (해외출입국관리팀) 법무부에 검역관리대상자 등록 및 검역 협조 요청

□ **검역조치 절차**

< 검역관리대상자 출국 시 >



< 검역관리대상자 입국 시 >



※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8309호(2022.3.4.)

군용(軍用) 운송수단의 경우, 입항목적 및 관리주체가 명확함에 따라 해당 운송수단에 대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고, 입국자에 대한 PCR검사·격리 등 감염관리 철저

※ 본 절차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시 공문 등으로 사전 안내

※ 미해군 운송수단 대상 검역절차는 미측과 협의완료 후 반영 예정

1 한국항에 들어오기 전

- (입항전 건강확인)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제출
 - (제출대상) 국내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외에서 승선한 내·외국인
 - (제출기준) 승선지(기항지)에서 실시한 PCR검사 결과 또는 입항전 48시간 이내에 의료진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제출
 - 다만, 보안상 개인별 PCR음성확인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국방부(해군 등)에서 ‘제출 대상자 전원 음성 인증 문서’ 제출 가능(공문 등)
 - ※ ‘전원 음성 인증 문서’ 요건은 각 측의 양식에 따름
- (검역신고)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한국에 들어오기 24시간전에 관할 검역소장에게 제출(대리점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 가능)

2 한국항에 들어온 후: 검역감염병 환자 유무에 따라 절차 구분

구분	① 검역조사 일부 생략 시	② 승선검역 시
조건	코로나19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사망자가 없다고 통보한 경우	코로나19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사망자가 있다고 통보한 경우
입항 전 신고방법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제출 (선박종류를 군용 운송수단으로 신고)	좌동
입항 전 제출 서류	PCR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외에서 승선한 인원)	좌동
입항 후 제출서류	없음	① 승무원 및 승객 명부 ② 건강상태질문서 ③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검역방법	서류 확인 및 관련 시스템을 통한 검역조사	서류 확인 및 검역관이 직접 승선하여 검역조사

※ 군용 운송수단이나 선박종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해군 등에서 검역소로 증빙서류 제출(공문)

① (검역조사 일부 생략 시) 관할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 등*, 사망자와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고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은 다음의 절차에 따름 (검역법 제6조제3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검역감염병 환자등) 검역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 군용 운송수단의 경우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확인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검역조사는 생략가능(검역법 제12조제1항제2호)
- 검역조사 생략 신청은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제출로 같음
-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는 입항전 PCR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제출로 확인(제출 대상자에 한함)
- 검역소장은 제출 받은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및 PCR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확인 후 검역조사 생략

< PCR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미제출 시 조치사항 >

- (조치사항) 하선여부 관계없이 미제출자 대상 PCR검사 실시, 외국인은 국내 하선(상륙포함) 금지(검사대상자 '음성' 확인 후 하역작업 가능)
- (법적조치) 「검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서류 제출한 경우에는 벌칙(법 제39조제1항제2호) 또는 과태료(법 제41조제2항제6호) 부과

② (승선검역 시) 관할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은 다음의 절차에 따름(검역법 제6조제3항제3호 및 같은법 제12조의4제3항)

- 감염병의 국내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검역관이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검역조사 실시(검역법 제12조의4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5)

* 검역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탑승인원 전원에게 PCR검사 실시

-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조사 시 관할 검역소장에게 승무원·승객 명부, 개인별 건강상태질문서*, 선박보건상태신고서 제출

* 선박 내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의사가 대표로 선내 모든 승객·승무원의 건강 확인서 제출 가능

③ 하선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 (특별입국절차) 하선자(상륙 포함) 대상 PCR검사 등 실시
 - * 불요불급한 하선 제한, 국방부(해군 등) 관리 하 군사 보안구역 내 일정공간에서만 머무르는 경우, 입국심사 또는 상륙허가를 받지 않으므로 하선으로 보지 않음(특별입국절차, PCR검사 미실시)
- (특별검역신고서) 관리주체가 명확함에 따라 생략 가능
- (진단검사) 검역소 인력 부족시 검체는 함정 내 의료진(또는 해군 등)이 채취하며, 검체에 대한 PCR검사는 검역소에서 수행(수탁 등)
 - * 운송수단 내에서 PCR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검사 후 검역소로 결과 통보

④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음성'인 경우) 하선 허용 및 검역확인증 발급
 - * 검역확인증은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 필요)
- ('양성'인 경우) 확진자는 재택,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 국방부 등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격리시설도 가능
 - ※ 재택치료 관련 사항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 및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에 따름
- (확진자) 재택치료 불가 시 지자체에 병상배정 협조요청(검역소), 확진자 이송(국방부, 해군 등)
- (접촉자) 확진자의 접촉자는 국방부(해군 등) 관리 하 10일간 수동감시
 - * 6~7일차 RAT검사(자가검사)를 권고하며, 하선자는 반드시 하선 전 PCR검사 실시
 - ※ 군에서 역학조사 시, 역학조사관이 접촉자 범위 및 재검출자 판단 가능
- (소독명령) 검역소장이 소독명령 및 이동금지 조치 시행
 - * 소독완료 후 검역소장에게 소독결과보고서(소독업무대행자) 제출시 이동금지 해제
 - * 소독업무대행자가 아닌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소유자·관리자가 소독을 하는 경우 소독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며, 소독 결과는 사용약물, 소독방법, 소독일시 등을 포함하여 자료제출(별도 양식 없음)
- (하역 등 작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하 작업 가능

- (확진자 이송 불가시) 확진자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조치(검역소장은 이동금지 및 격리통지서 발부)
 - * 확진자 격리기간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시)까지
 - * 예) 4월1일 검체채취한 경우, 4월7일 자정(24시)까지 격리
- (확진자 하선)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하선 가능(격리해제 이후라도 불요불급한 상륙은 제한)
 - * 확진자에 대한 추가 검사는 불요